

프랑스의 공영방송법

-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동 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I. 들어가는 말
- II. 국가의 절대적 독점기(1945-1964)
- III.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시대(1964-1974)
- IV.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ORTF)의 해체
(1974-1982)
- V. 방송에 대한 국가독점의 종식(1982-1986)
- VI.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의 단계적 창설(1989-2000)
- VII.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두 개의 법률(2000-2007)
- VIII. 2009년 공영방송법의 개정
 - 1. 개정과정
 - 2. 주요개정내용
- IX.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프랑스 방송과 통신의 상황은 방송과 통신이 처음 시작되었던 이래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즉,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은 1935년 4월 26일에 송출되었으며,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인 최초의 정

규방송은 1937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그리고 최초의 상설방송국인 Paris-Télévision은 1943년 9월 30일에 실시되었으며, 1946년에는 16시30분에서 17시 30분 사이와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텔레비전 정규방송이 송출되었다. 그리고 최초의 일기예보는 1946년 12월 17일부터 있었으며, 최초의 공연 생방송은 1947년 6월 5일에, 최초의 스포츠 생방송(Tour de France의 결승전 중계방송)은 1948년 12월 24일에 있었다. 또한 1949년 5월에는 최초의 여자 아나운서가 나타났으며, 최초의 텔레비전 뉴스는 1949년 6월 29일에 방송되었다. 그리고 최초의 어린이방송은 1949년 10월 2일에, 최초의 주일미사방송은 1949년 10월 9일에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화적인 시대 이래로 텔레비전 방송은 상당히 변화되었으며, 기술과 대중 역시 상당히 진보 또는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공영텔레비전방송은 번영하였고, 발전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1986년 9월 30일의 n°86-1067법률 제3절(titre)이 '방송통신의 공적영역(secteur public)'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인 관점에서 법률이 공식적으로 방송이 공역무라는 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43-11조가 공영방송을 책임지는 회사에 대해 공역무(service public)의 임무를 열거하기 때문에 방송은 공역무에 속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역무로서의 방송은 독점적이거나 권력에 대해 종속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지난 수십 년 간의 방송법제의 변천사는 방송의 정체성, 임무, 내용을 급작스럽게 변화시키는 경쟁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점진적으로 정치적 후견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보여준다.

II. 국가의 절대적 독점기(1945-1964)

원래 프랑스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민간라디오방송의 경쟁모델로 윤곽이 잡혔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i) 주파수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기술적 요인, ii) 국가는 개별이익으로부터 일반이익을 보존하며, 정보의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 iii) 두 번째 논리로부터 유래되는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여론에 대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영향력 때문에 통신분야의 국가적 독점체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방송에 대한 국가의 독점을 위해서 Radiodiffusion française가 창설되었으며, 1949년에는 그 명칭이 Radiodiffusion et télévision de France(RTF)로 변경되었다. 이 기관은 10년 동안 고전적 행정조직으로 기능하였으며, 그 뒤에 1959년 2월 4일의 n°59-273명령(ordonnance)에 의한 정관변경으로 정보장관



(ministre de l'information)의 직접적 권한하에 있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시설(établissement public)이 되었다. 따라서 RTF는 이사회(conseil d'administration)가 없었으며, 사장과 책임자급의 간부들은 항상 정부의 의사에 따라 임명되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국가의 RTF에 대한 긴밀한 영향력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방송의 지배는 완전하지 않았다.

III.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시대(1964-1974)

1964년 6월 27일 법률(Loi n°64-621 du 27 juin 1964)은 RTF를 폐지하고, 정보 장관의 단순한 감독을 받는 Office de radiodiffusion-télévision française(ORTF)를 창설하였다. 법적으로 공공시설은 자율성을 가지지만, 국가는 이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결과 방송사사장은 각료회의에서 임명되게 되었으며, 예산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이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방송이 공역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즉, 동 법률 제1조는 ORTF는 “정보, 문화, 교육 그리고 대중의 오락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국가적 공역무를” 보장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한편, radiodiffusion-télévision française의 정관에 관한 1972년 7월 3일 법률(Loi n°72-553 du 3 juillet 1972)은 프로그램에서의 객관성과 도덕성의 의무와 공동체의 일반이익을 항상 중시할 필요성을 규정함으로써 1964년 6월 27일 법률 제1조의 규정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동 법률은 ORTF를 기능적 단위(unités fonctionnelles)로 조직하였으며, 광고수입의 비율은 각 단위의 전체수입의 25%를 넘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조달(financement public)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IV.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ORTF)의 해체(1974-1982)

1974년 8월 7일 법률(Loi n°74-696 du 7 août 1974)은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ORTF는 1970년대 초반부터 그 활동의 증대로 인한 경영문제에 직면하였다. 즉 ORTF의 두 번째 채널은 1964년에, 세 번째 채널은 1972년에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해 ORTF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그 당시 텔레비전이 프랑스의 가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볼 때 점점 더 그 정당성에 의문이 제

기되었다. 즉 1958년에는 단지 5%의 프랑스 가정에만 텔레비전이 보급되었지만, 1974년에는 82%의 프랑스 가정이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로, 프랑스 가정은 2008년에는 95% 이상이 텔레비전을 소유하였으며, 54%의 프랑스인이 1대 이상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졌다.

한편, 1974년 8월 7일 법률은 그 제정과정 자체가 아주 짧은 것이 특징이다. 1974년 초에 ORTF의 사장인 Marceau Long에 의해 준비된 개혁안은 Georges Pompidou 공화국 대통령의 사망으로 사실상 실패하였다. 곧바로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Valéry Giscard d'Estaing은 새로운 개혁에 착수했으며, 1974년 7월 17일에 각료회의에서 법률안이 채택되었고, 1974년 7월 23일에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1974년 7월 28일에 최종적으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1974년 8월 7일에 공포되었다.

1974년 8월 7일 법률의 주요사항

1974년 법률의 가결에 따라 ORTF는 5개의 회사와 2개의 공공시설로 분산되게 되었다.

- 하나의 라디오방송국영회사는 Radio-France가 되었다.
- 이미 존재하는 3개 채널에 상응하는 3개의 텔레비전 국영회사는 TF1, Antenne 2, France-Régions 3(FR3)가 되었다.
- 주식회사 법제에 적용을 받지만 자본의 대부분이 공적인 자본으로 구성된 하나의 방송제작회사는 ORTF의 무거운 전체 방송제작능력을 계승했으며, société française de production(SFP)가 되었다.
- 프랑스와 외국을 향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을 보장하는 것과 방송망과 설비의 조직과 활용을 담당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산업적·상업적 공적시설인 방송담당공적시설은 Télédiffusion de France(TDF)가 되었다.
- 특히 기록의 보존을 보장하고, 방송창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직업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산업적·상업적 공적시설인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INA)가 있다.

어떠한 조직형식하에도 ORTF를 재구성하지 않고자 하는 진보적인 생각 때문에 연합적이거나 조정적인 성격의 어떠한 기관도 배제하게 되었다.

요컨대, 공역무에 대한 임무와 국가의 독점은 여전히 잔존했지만, 그 조직은 서로 서로 독립된 7개의 조직으로 분할되었으며, 이들 조직체 모두 국가가 유일한



주주(actionnaire)인 사법적 법인격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는 데크레(décret)를 통해서 사장을 임명했으며, 공공시설에 의한 공역무의 의무에 대한 준수를 감시했다.

V. 방송에 대한 국가독점의 종식(1982-1986)

1982년 7월 29일 법률(Loi n°82-652 du 29 juillet 1982)은 제1조에서 “방송통신은 자유다(*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st libre*)”라고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역무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즉 1982년 7월 29일 법률은 국가의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독점을 폐지했으며, 공역무의 임무를 상당히 확대하였으며, 이와 같이 확대된 공역무의 임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독립행정청(*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인 고등방송통신청(*Haute Autorité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HACA*)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 기관은 이사회에서 임명한 인사들 가운데 3년 임기의 *Antenne 2, France Région 3, Radio Francen* 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졌다.

일명 ‘Léotard 법률’인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Loi n°86-1067 du 30 septembre 1986)은 통신의 영역에서 국가의 독점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으며, 방송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게다가 더 이상 ‘공역무(*service public*)’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며, ‘공적인 영역(*secteur public*)’이라고 말한다. TF1은 민영화되어 1987년 4월 6일에 Bouygues 그룹에 넘겨졌으며, 통신과 자유의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a communication et des libertés, CNCL*)가 HACA를 대체하였으며, CNCL은 1989년에 고등시청각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공영방송사의 사장들의 임명규정은 변화가 없었다.

VI.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의 단계적 창설(1989-2000)

1989년 8월 2일 법률(Loi n°89-532)은 *Antenne 2*와 *FR3*의 공동사장직의 규정을 두었다. 1992년 9월 7일 이 두 채널은 *France 2*와 *France 3*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당시에 단지 상업적 명칭이었던 *France Télévision*이라는 공통의 상호로 재결합되었다. 그렇지만 *France Télévision*의 구조는 법인격이 없었다.

2000년에는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을 개정하는 2000년 8월

1일 법률(Loi n°2000-719 du 1^{er} août 2000)에 의해 France 2, France 3, La Cinqüème-2002년 1월에 France 5로 이름이 변경됨-를 결합하는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프랑스 텔레비전(France Télévision SA)’을 창설하였으며, 그 법적인 틀을 확정했다.

즉, France Télévision은 주식회사에 관한 법제의 규정에 따르게 되었으며, 그 전체자본은 국가가 소유하였다. 2000년 8월 1일 법률은 또한 “France Télévision은 사용자에 대해 요금지불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의 의무규정집에 규정된 공역무의 역할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디지털방식으로 방송된 텔레비전방송을 편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자회사의 자본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공법인(personnes publiques)이 소유한다”는 규정을 설치하였다.

CSA는 자신이 지명한 인사들 가운데 France Télévision 이사회 의장을 지명한다. 뿐만 아니라, France Télévision 이사회 의장은 France 2, France 3, France 5, (Réseau France Outre-mer) 이사회 의장의 직위를 가진다.

VIII.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두 개의 법률(2000-2007)

인터넷과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이전의 시대에는 텔레비전이 프랑스 가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프로그램 수신 방식을 다양화하게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현재의 디지털 혁명은 이와 같은 기존의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새로운 영상소비방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지금부터 각각의 개인은 주문식공급(offre à la carte)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늘날 TNT(Télévision numérique terrestre)의 비약적 성장과 발전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새로운 영상소비방식은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혁명의 영향을 깊이 받은 프랑스의 공영방송은 그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상황에 적응하고자 했으며, 입법자는 21세기 초부터 미래의 텔레비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틀을 확립함으로써 France Télévision조직의 합리화를 추구했다.

특히, 전자통신과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2004년 7월 9일의 법률(Loi n°2004-669 du 9 juillet 2004)은 프랑스의 공영방송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RFO를 France Télévision 그룹으로의 통합을 실행했으며, RFO에 그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그룹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전망을 다시 부여하였다. 또한, 2004년 7월 9일 법률은 CSA로 하여금 새로운 방송형태의 발전을 위해 보충적 주파수를 획득하기 위해 FM 주파수대의 계획을 조직하고, 최적화하



는 권한을 부여했다.

방송의 현대화와 미래텔레비전에 관한 2007년 3월 5일의 법률(Loi n°2007-306 du 5 mars 2007)은 두 가지 주요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늦어도 2011년 11월 30일로 예정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완전한 변화를 보장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고화질 텔레비전(télévision haute définition, TVHD)과 개인이동 텔레비전(télévision mobile personnelle, TMP)의 발전에 필요한 법적인 틀을 실행함으로써 미래텔레비전의 발전조건을 확정하는 것이다.

VIII. 2009년 공영방송법의 개정

1. 개정과정

(1) 정부의 법률안 제정작업

프랑스의 공영방송법 개정은 2008년 1월에 있었던 공화국 대통령 사르코지의 연두기자회견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공영방송은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영방송과 구분되어야 하며, 현재 프랑스의 공영방송이 정체성을 상실한 것은 공영방송의 이중적 재원구조(수신료와 광고)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공화국 대통령인 사르코지는 공영방송사의 광고를 폐지함으로써 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으로부터 탈피하도록 하여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공화국 대통령의 뜻은 공영방송관련 법안의 기초를 위한 코페위원회(Commission pour la nouvelle télévision publique)의 구성으로 귀결되었으며, 동 위원회는 공영방송을 개혁하기 위한 보고서와 위원회의 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문화커뮤니케이션부에 의해 2008년 9월 24일 국무회의에 제출된 공영방송법안은 10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¹⁾

(2) 의회에 의한 법률안 토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영방송관련 법률안은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Légifran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률안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 10월 22일 공영방송법안(projet de loi relatif à la communication

1) 성육제, 프랑스 미디어 개혁의 방향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11~18쪽.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n° 1209)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공영방송사 사장임명에 관한 조직법률안과 공영방송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정부는 2008년 10월 22일 본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긴급처리(urgence)를 요청하였다.

2) 하원 제1독회

2008년 11월 19일에 하원은 동 법률안에 대한 보고서(n° 1267)를 제출하였으며, 2008년 12월 17일 하원 제1독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가결(n° 219)되었다.

3) 상원 제1독회

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2008년 12월 17일에 상원에 제출되어, 문화위원회(commission des affaires culturelles)에 이송되었으며, 2008년 12월 22일에 법률안에 대한 상원의 보고서(n° 150)가 제출되었다. 그리고 최초의 법률안은 2009년 1월 16일에 상원 제1독회에서 수정되게 되었다(TA n° 38 참조).

4) 상하원동수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

상원에 의해 수정된 공영방송법률안(n° 1385)은 2009년 1월 21일에 공영방송사 사장임명에 관한 조직법률안과 공영방송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법률안에서 아직 의견대립이 있는 규정들을 처리하기 위해 상하원동수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가 소집되었다. 그리고 2009년 1월 28일에 보고자(rapporteur)에 의해 상하원동수위원회의 보고서가 상원과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헌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하원동수위원회 법률안에 대해 하원에서 2009년 2월 3일에 가결되었으며(TA n° 238), 상원에서는 2009년 2월 4일에 가결되었다(TA n° 45).³⁾

(3) 법률안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결정

그렇지만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곧바로 공포되지 아니하고, 헌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0인 이상의 상원의원에 의해 2009년 2월 6일에, 2009년 2월 9일에 헌법위원회의 심판에 회부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헌법위원회는 2009년 3월 3일 결정을 통하여 본 법률안 제14조 제2항의 문구³⁾, 제25조 3°의 제2항, 제30조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⁴⁾

2) 상하원동수위원회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절충안으로 한꺼번에 4유로를 올리는 대신, 2년에 걸쳐 2유로씩 4유로를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성육제, 프랑스 미디어 개혁의 방향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16쪽.

3) 문제가 되는 문구는 “France Télévision과 Radio France의 사장과 프랑스 외의 방송을 책임지는



2. 주요개정내용

2009년 프랑스 공영방송법⁵⁾은 단지 공영방송과 관련된 개정만 한 것이 아니라, EU 지침의 프랑스 국내법으로의 전환과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의 개혁과 관련된 규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⁶⁾ 하지만, 이 글에서는 공영방송과 관련된 규정, 특히 현재 우리의 방송관계법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영방송의 광고폐지

2009년 개정 프랑스 방송법은 우선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영방송의 광고를 폐지하기 위한 규정을 설치하였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⁷⁾

VI. 제44조의 I 에서 언급한 텔레비전 국가서비스 가운데 20시에서 6시 사이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지방과 지역권 방송을 제외하고, 광고메시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품과 서비스 일반에 대한 광고(appellation générique) 메시지는 예외로 한다. 또한 본 규정은 프랑스 본토 전체에 대해서 제44조의 I 에서 언급한 아날로그 방식의 텔레비전 방송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6시와 20시 사이에 방송되는 텔레비전 국가서비스에도 적용된다. 본 규정은 공익 캠페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메시지의 방송에 할애되는 최장 시간은 정해진 시계시간으로 측정된다. 해외 도(道), 해외 공공단체 또는 뉴벨칼레도니아에 대한 아날로그 방식의 텔레비전 방송이 종료되거나, 늦어도 2011년 11월 30일에는 관계되는 해외영토에 대한 위의 I 에서 언급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의 방송은 방해전파가 없는 지상파 민영텔레비전 방송이 존재하는 한 제품과 서비스 일반에 대한 광고(appellation générique)를 제외하고 광고메시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의 사장의 임명에 관한 2009년 3월 5일의 조직법률 n°2009-257에 의해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이다.

4) Décision n° 2009-577 DC du 03 mars 2009.

5) LOI n° 2009-258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6) 동 법률은 제1절은 공영방송에 관한 규정, 제2절은 시청각분야와 전자통신분야 사업자의 총매출에 대한 세금제도, 제3절은 2007년 12월 11일 지침(2007/65/CE)에 의해 수정된 1989년 10월 3일 지침(89/552/CEE) 규정의 국내법전환, 제4절은 영화, 기타 예술, 애니메이션 산업관련 규정, 제5절은 기타조항, 경과 및 최종규정에 관한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7) 관련조문에 대한 번역은 성욱제(역), 2009년 프랑스 공영방송법-1986년 방송법 개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를 기본적으로 참고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 수정을 가했다.

늦어도 2011년 5월 1일까지 정부는 의회에 광고업계를 대표하는 직업조직체의 자문을 거쳐서 광고시장의 변화와 텔레비전 편집자 전체의 상황에 대해 본 제VI의 제1항 규정이 실행된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본 VI의 제1항의 실행에 대해 국가는 재정적 보상을 한다. 매년 재정법률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와 같은 보상액은 제44조 제 I 에 언급된 회사에 충당된다.

II. 고등시청각위원회는 2009년 6월 30일 전까지 각 텔레비전 채널에 의해 방송된 청소년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광고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2) 공영방송의 재정관련 조항 변경

2009년 개정 프랑스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재정과 관련하여 ‘시청료(redevance audiovisuelle)’에서 ‘공영방송세(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영방송을 위한 세액도 종전에 프랑스 본토의 경우 116유로를, 해외 도(道)의 경우 74유로를 징수하던 것을 프랑스 본토의 경우 120유로로, 해외 도(道)의 경우 77유로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새로운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9조 조세법전 제1605조 I 의 ‘시청료(redevance audiovisuelle)’는 ‘공영방송세(contribution à l’audiovisuel public)’으로 변경한다.

제31조 조세법전 제1605조 III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프랑스 본토의 공영방송세는 120유로이며, 해외도(道)의 공영방송세는 77유로이다.” “이 금액은 2010년을 포함하여 해당년도의 재정법률안에 첨부되는 경제적·사회적·재정적 사항에 관한 보고서에 규정된 담배를 제외한 소비물가지수에 연동된다. 소수점은 반올림 또는 반내림하며, 0.50유로는 1유로로 계산한다.”

II · I 조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France Télévision 등의 이사회 구성의 변경

France Télévision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개정전 방송법은 “France Télévision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12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1°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지명하는 국회의원 2인; 2° 국가를 대표하는 4인; 3° 고등시청각위원회가 임명하는 유자격자 4인. 이 가운데 최소한 1인은 시민단체, 또 다른 1인은 방송이나 영화제작계 인사 1인이 된다; 4° 공공영역의 민주화 관련법(1983년 7월 26일 제83-675호)에 상응하여 선출된 2인”이라고 규정하였으나⁸⁾, 2009년 개정 프랑스 방송법은 다음과 같이 이사회 구성원의 구성방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2009년 개정 프랑스 방송법은 Radio France와 해외방송을 책임지는 회사의 이사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인적 구성에 대한 변경을 가져왔다.⁹⁾ 관련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조 위에서 언급한 1986년 9월 30일의 법률(n°86-1067) 제47-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47-1조 - France Télévision의 이사회는 의장 외에 아래에서 규정하는 14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1° 하원과 상원의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위원회에 의해 각각 지명된 2명의 상하원의원, 2° 5명의 정부측 대표, 3° 그 권한의 비율에 따라 고등시청각위원회에서 임명된 5명의 개인, 4° 공적 분야의 민주화에 관한 1983년 7월 26일 법률(n°83-675) 제2절에 따라 선출된 2명의 직원대표

제11조 제 47-2조 위에서 언급한 1986년 9월 30일의 법률(n°86-1067) 제47-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47-2조 - Radio France의 이사회는 의장 외에 아래에서 규정하는 14인으

8) 개정전 방송법 규정에 대한 번역은 방송위원회, 프랑스 방송법, 2000을 참조하였음.

9) 개정전 관련법 규정을 “제47-2조 Réseau France Outre-mer, Radio France 및 Radio France Internationale의 각각의 이사회는 12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1° 하원과 상원에서 지명한 국회의원 2인; 2° 국가를 대표하는 4인; 3°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유자격자 4인; 4° 1983년 7월 26일 체결된 법 제83-675호의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회사의 이사회에서 선거에 의거하여 선출된 대표 2인. 제47-3조 Réseau France Outre-mer와 Radio France의 사장은 이사회가 임명한 자 중에서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위원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Radio France Internationale의 사장은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국가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임원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위원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방송위원회, 프랑스 방송법, 2000, 105-106쪽.

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1° 하원과 상원의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의회 위원회에 의해 각각 지명된 2명의 상하원의원, 2° 5명의 정부측 대표, 3° 그 권한의 비율에 따라 고등시청각위원회에서 임명된 5명의 개인, 4° 위에서 언급한 1983년 7월 26일 법률(n°83-675)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한 기업이 사회의 직원대표의 선출에 관한 조항에 따라 선출된 2명의 직원대표

제12조 위에서 언급한 1986년 9월 30일의 법률(n°86-1067) 제47-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47-3조 - 프랑스의 해외방송을 책임지는 방송사의 이사회는 의장 외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5년이다: 1° 하원과 상원의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의해 각각 지명된 2명의 상하원의원, 2° 5명의 정부측 대표, 3° 그 권한의 비율에 따라 고등시청각위원회에서 임명된 5명의 개인, 이 중 적어도 1명은 프랑스어권의 영역에서 인정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함. 4° 위에서 언급한 1983년 7월 26일 법률(n°83-675) 제2절에 따라 선출된 직원대표 2명. 프랑스의 해외방송을 책임지는 회사의 사장은 이 회사의 프로그램편집 자회사의 사장, CEO, 사무총장, 집행위원장을 겸한다.

(4)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명과 해임방법의 변경

2009년 개정 프랑스 방송법은 또한 공영방송사의 사장의 임명과 해임절차에 대한 변경도 가하였으며,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위에서 언급한 1986년 9월 30일의 법률(n°86-1067) 제47-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France Télévision, Radio France와 프랑스의 해외방송을 책임지는 회사의 사장은 고등시청각위원회의 동의와 France Télévision, Radio France와 프랑스의 해외방송을 책임지는 회사의 사장임명에 관한 조직법률에 따라 의회의 관계위원회의 동의 후에 데크레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5년이다. 본 조의 적용에 있어서 양원의 관계위원회는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제14조 위에서 언급한 1986년 9월 30일의 법률(n°86-1067) 제47-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France Télévision, Radio France와 프랑스의 해외방송을 책임지는 회사의 사장에 대한 위임은 France Télévision, Radio France와 프랑스의 해외방송을 책임지는 회사의 사장임명에 관한 조직법률에 의해 규정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고등시청각위원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이유가 부가된 찬성의견과 의회관계위원회의 공개적 의견이 있는 후에 이유가 부가된 테크레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따라서 2009년 개정 프랑스 방송법상 공영방송사의 사장의 임명은 고등시청각위원회의 동의와 상원과 하원의 관계위원회인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위원회의 동의 후에 테크레(décret)를 통하여 임명되게 되었으며, 해임은 임명과 동일한 절차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테크레를 통하여 임명한다는 규정은 궁극적으로는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France Télévision, Radio France와 프랑스의 해외방송을 책임지는 회사의 사장의 임명에 관한 2009년 3월 5일의 조직법률(n° 2009-257)'은 헌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¹⁰⁾, 헌법 제13조는 공화국 대통령의 테크레 등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IX. 맺음말

프랑스 공영방송법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방송에 대한 독점에서 방송의 자유라

10) LOI organique n° 2009-257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nomination des présidents des sociétés France Télévisions et Radio France et de la société en charge de l'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

11) 프랑스 헌법 제13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① 공화국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법률명령(ordonnances)과 테크레(décrets)에 서명한다. ②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의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국사원(Conseil d'état) 위원 · 레지옹도뇌르(Légion d'honneur) 상훈국 총재 · 대사 · 특사 ·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감사관 · 지사(préfet) · 제74조에서 규정된 해외영토 및 뉴칼레도니 과건 정부대표 · 군 장성 · 지역별 대학총괄회의 장(recteurs des académies) · 중앙행정조직의 장은 국무회의에서 임명한다. ④ 국무회의에서 임명하는 여타 직위 및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권을 위임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⑤ 조직법률은 제3항에서 언급한 직책 이외에,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또는 사회 · 경제적 삶과 관련된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원의 관계상임위원회의 공개적 의견제시후에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직위와 직무를 정한다. 공화국 대통령은 각 위원회에서의 반대대표의 합계가 2개의 위원회에서 표현된 투표의 최소 3/5일 경우 지명할 수 없다. 법률은 관련되는 직위와 직무에 따라 관계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는 흐름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2009년의 개정방송법은 공영방송의 광고폐지, 시청료 인상, 공영방송의 이사회조직변경, 공영방송사사장의 임명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적어도 법규정상으로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프랑스의 개정상황을 곧바로 한국적 현실에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경우 비록 2009년 개정방송법이 방송에 대한 국가적 간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지만, 헌법과 개별법률 그리고 사회 전체의 저변에 흐르는 사상과 의견의 다양성에 대한 애착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